

# 정 정 신 고 (보 고)

2019년 4월 2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간이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10월 7일

3. 정정사유 :

- 종류 수익증권신설(종류C-P, 종류C-Pe, 종류C-R, 종류C-Re, 종류S-P)
-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간이투자설명서 전체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에 따른 투자위험 등급 변경	1등급(매우 높은 위험)	2등급(높은 위험)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종류 수익증권 신설	(주2) 상기 종류 수익증권 외에 종류A-G, 종류C-F, 종류C-G, 종류C-I1, 종류C-I2, 종류C-W, 종류S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상기 종류 수익증권 외에 종류A-G, 종류C-F, 종류C-G, 종류C-I1, 종류C-I2, <u>종류C-P, 종류C-Pe, 종류C-R, 종류C-Re, 종류C-W, 종류S, 종류S-P</u> 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1) 4. 운용전문인력	정기갱신	-	최근 결산일 기준 작성
II. (1) 5. 투자실적 추이 ※ 연도별 수익률 (세전 기준)	정기갱신	-	최근 결산일 기준 작성
II. (2).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에 따른 투자위험 등급 변경	이 투자신탁은 <u>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25.58%이므로</u>	이 투자신탁은 <u>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17.61%이므로 6</u>

	동성(연환산)에 따른 투자위험 등급 변경	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매우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III. (1) 과세	종류 수익증권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종류C-P, 종류C-Pe, 종류S-P 수익증권 가입자)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관련세법에 따라 과세하며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li> <li>- 퇴직연금제도의 세제(종류C-R, 종류C-Re 수익증권 가입자)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li> </ul>